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명령 의무 부과 등〉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09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문의 진단·감정 의무화	3
2.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동의여부 확인	12
3. 벌칙	17
4. 부칙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1. 28.
3. 회 부 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 담보를 위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약물치료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I. 검토의견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문의 진단·감정, 치료명령 청구 의무화

개정안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② (생략) <신 설>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저지른 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진단이나 감정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u> <u>1.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u> <u>2.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중</u>

현행	개정안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 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피고 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u> <u>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u> ④ 제1항 및 제3항----- ----- ----- -----.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2항 및 제3항----- ----- -----.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환자¹⁾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하 “전문의”라 함)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함)을 명령의 원인이 된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에 청구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혹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할 수 있도록 규정²⁾하고 있으며, 치료명령의 청구는 검사의 재량 사항이나 치료명령을 청구하려는 경우 전문의에게 진단·감정을 받아야 함.

- 한편, 개정안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6010호, 이하 해당 법률안에 관련해서는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안을 말함)이 발의되었음.

해당 법률안은 제2조제1항제1호³⁾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

-
-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고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 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되거나 치료감호가 독립청구된 성폭력범죄사건(이하 “피고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 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중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 나.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 중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 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결정을 선고·고지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개정안은 확정 판결을 통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지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조건인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또는 3회 이상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⁴⁾까지는 제외⁵⁾⁶⁾)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하여 전문의의 진단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범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죄는 포함하지 않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 범죄 대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 [단, 305조의3(예비·음모 제외)]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 [단, 305조의2(상습범), 305조의3(예비·음모 제외)]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3조(특수강도강간)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미수범(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포함)
형법상 강도강간, 해상강도강간(미수범 포함)	
청소년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성범죄	

- 6) 다만,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검사의 재량으로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

감정을 받은 후 그 결과 해당 범죄자들이 성도착증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문의의 진단·감정 의뢰 및 치료명령 청구를 현행법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임.

- 2011년 법 시행 이후 2023년까지 검사에 의해 치료명령이 청구된 건 수가 총 72건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명령은 활용 빈도가 낮은 보안 처분임.

<검찰의 치료명령 청구 및 법원의 심리결과(2011~2023)>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청구	72	0	6	24	7	9	4	1	5	2	3	7	2	2
인용	30	0	3	9	3	4	3	0	3	0	2	2	1	0
기각	39	0	3	15	4	5	1	1	2	2	1	5	0	0
진행중	3	0	0	0	0	0	0	0	0	0	0	0	1	2

※ 2023. 12. 31. 기준 검사청구 72건(인용 30건, 기각 39건, 진행 중 3건)

자료 : 법무부

이는 치료명령이 비록 재범예방의 효과⁷⁾가 크지만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⁸⁾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므로 검사의

7)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월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보도자료, 2024. 1.2.

8)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가9]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치료명령에 의하여 약물투여가 되면 치료대상자의 성적 충동·욕구가 억제되고, 성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도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

전문의를 대한 진단·감정 의뢰 과정에서부터 재범 위험성 등에 따른 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엄격한 고려 등이 이루어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1,000명 이상의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들과, 200여명 수준의 3회 이상 성폭력범죄 재범자들에 대하여 전문의의 진단·감정 의뢰를 강화할 경우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되는 사람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건 수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발생 건 수 추이(2014~2023)>

연도	발생 건 수		
	13세 미만	13세 ~ 20세	계
2014	1,208	8,322	9,530
2015	1,272	7,753	9,025
2016	1,231	7,342	8,573
2017	1,270	8,079	9,349
2018	1,283	7,308	8,591
2019	1,376	7,108	8,484
2020	1,155	6,310	7,465
2021	1,210	6,904	8,114
2022	1,344	8,667	10,011
2023	1,500	8,339	9,389

자료 :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성범죄 전과 횟수 현황(2014~2021)>

연도	전과없음	1회	2회	3~5회	6~9회	10회이상
2014	8,371	1,126	309	140	4	-
2015	10,122	1,349	337	161	4	1
2016	8,943	1,162	379	167	7	2
2017	9,982	1,193	331	158	10	-
2018	11,135	1,334	371	196	12	-
2019	10,550	1,281	400	212	34	-
2020	10,543	1,271	353	223	32	1
2021	10,600	1,174	320	185	24	-

자료 : 법무부, 2023년 성범죄백서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억제 효과성이 비교적 높았으나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치료명령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치료명령의 청구여부는 규범영역의 전문가인 검사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개정안의 경우 비록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가 전문의에 대한 진단·감정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내용을 치료명령의 청구권자인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는 실무에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 정신과

전문의가 치료명령 청구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검사가 법원에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치료명령을 반드시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⁹⁾이 있음. 이 경우 현행법 제4조의 내용과 개정안이 실질적 차이가 없어져, 개정의 실익이 감소할 수 있음.

법체계적으로는, 제5조¹⁰⁾의 조사는 검사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량으로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치료명령 청구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제9조¹¹⁾에서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특별한 사정’은 그 의미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정 개념으로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여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의의

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2.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조사) ① 검사는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가의 감정 등) 법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의견만으로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진단·감정을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다소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시적 사유를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특정 범죄를 범한 수형인 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한 것이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¹²⁾을 감안하여, 개정안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범죄자로 치료명령의 대상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헌법재판소 2014. 8.28. 2011헌마28 등] 재판관 김이수 등의 반대의견

2.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동의여부 확인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청구 신청의 대상인 경우 치료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22조의2(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성폭력 수형자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용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 개정안 제22조의2제1항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은 각각 서로를 인용하고 있어 개정안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아래에서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함.

○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거주지 지정명령’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정의¹³⁾되며, 보호관찰소의 장이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검사에게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¹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22조의2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과정에서 그 대상자인 수형자들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내용

13)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거주지 지정명령”이란 법원이 제9조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14)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4조(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①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해당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나이, 건강과 신체 상태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 집행 중에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하여 거주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지 지정명령 대상자들에게 치료명령의 병행 실시를 통해 재범 억제 효과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치료명령은 비록 재범예방의 효과¹⁵⁾가 크지만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¹⁶⁾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큰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함께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면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데,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결정하는 경우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부과여부 또는 개정안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⁷⁾,

법원이 치료명령에 동의하는 등 재범 방지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15) ‘2011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월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는 등 재범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보도자료, 2024. 12.

16)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치료명령에 의하여 약물투여가 되면 치료대상자의 성적 충동·욕구가 억제되고, 성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성적 욕구나 행위까지도 억제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피치료자의 정신적 욕구와 신체기능에 대한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인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한다.(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17)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제9조(거주지 지정명령의 결정 등) ① 법원은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기간(이하 “부착기간”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기간(이하 “거주지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결정으로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는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또는 「성폭력범죄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대상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참작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게는 비교적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필요성 및 그 기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법체계적 측면에서는 현행법 제22조제2항제1호18)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이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들에 대한 치료명령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한데 반해,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의 신청 대상자인 성폭력 수형자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한 청구 주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청구 대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 제22조의2 제1항에서 제22조제1항도 준용하도록 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법원행정처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를 신청 하기에 앞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구치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는 것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사실상 강제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법 제22조제2항제1호19)에 따라 수용시설의 장이 수형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장이 성폭력 수형자에게 약물치료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22조의2는 현행법과 규율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없이도 제22조에 따라
치료명령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거주지 이전명령 청구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

①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이하 “성폭력 수형자”라 한다) 중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구치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벌칙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²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변경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제35조(벌칙) ② 이 법에 따른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②----- ----- ----- ----- 3천만원-----.

-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전부개정 2022. 1.20, 지침 제390호) 제45조에서는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이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감액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¹⁾, 벌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에 상응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치료명령의 집행 실효성을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준수사항)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할 것
2.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을 것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21)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2024., p.775.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위반한 준수사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²²⁾,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준수사항 위반시 경고, 구인, 긴급구인을 통해 유치 후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및 소년보호처분의 변경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²³⁾하고 있음.

2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

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의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한 양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 제39조(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拘引)할 수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도주한 경우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제40조(긴급구인)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하여 제39조에 따른 구인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구인장 없이 그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하다 함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42조(유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수용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벌금형을 제외한다)의 선고유예의 실효(失效) 및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의 신청
 2. 제48조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
 3. 제49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신청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회의의 진단이나 감정 및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피고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지정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 제22조제2항제6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개정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6010호)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과 동일하게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법 시행전 지정거주시설 후보지 선정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재판과정에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²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게 개정안

제4조제3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임.

현행법으로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치료명령 청구가 가능하지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 대한 전문의 진단·감정 및 치료명령 청구를 의무화하여 치료명령에 대한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개정안 제4조제3항을 소급적용할 경우 개정안의 실효성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부작명령을 소급적용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4.15., 법률 제10257호) 제2조제1항 위헌제청 사건²⁵⁾,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소급적용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제11556호) 제7조제1항 등 위헌 소원 등 사건²⁶⁾에서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중단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24) 치료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성폭력범죄 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25)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26) 2016. 12. 29. 2015헌바196·222·343(병합)

하지 않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²⁷⁾한 바 있음.

문 의 처
02-6788-5075

27) [헌재 2015. 12. 23. 2013헌가9] 성충동 약물치료는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되고,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고,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의 가해제제도가 있으며, 치료 중단 시 남성호르몬의 생성과 작용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들은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충족된다.